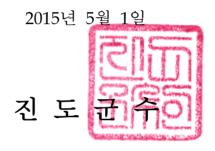
진도군 고시 제 2015 - 20 호

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 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승객명부 허위작성 방지 및 승선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

1. 개 정 이 유

- 1. 낚시업자 · 승객의 승객명부를 허위로 작성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의 부재로 정확한 승객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바, 그 제도적 · 법적 방지제도를 마련하여 낚시업자의 승객의 신원파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- 2. 승객을 무인도·갯바위·간출암에 하선한 후 낚시어선이 공선으로 입항 시, 기상불량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 하선자에 대한 긴급대처가 곤란한 바, 동 낚시어선이 입항 시에는 하선한 승객을 모두 태우고 입항하게 함으로써 위험지역 하선 승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낚시어선 승선자 신분증 제시 제도화
- 무인도, 갯바위, 간출암에 하선 후 복귀시 전원복귀 제도화
- 운항 중 음주행위 금지
- 타법개정에 의한 "해양경찰서"를 "해양경비안전서"로 수정

3. 개정고시 전문

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전운항 의무)

- ① 낚시어선어업자는 낚시어선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운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.
- ③ 낚시어선어업자(선원포함)는 약물중독 상태이거나 혈중 알코올 0.08%이상의음주상태에서는 낚시어선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.
- ④ 낚시어선어업자는 이용승객을 태우고 항·포구를 출항 또는 입항하고자 할때는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(이하"출입항신고기관"이라 한다)의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- ⑤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
- ⑥ 낚시어선어업자는 숭선하려는 숭객의 신분증과 숭객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, 숭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경우 숭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
- ⑦ 낚시어선어업자는 무인도, 갯바위, 간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 시킨 경우 낚시승객과 상호 연락망을 유지하여 긴박한 상황 발생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태우고 입항하여야 한다.
- ⑧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낚시 어선어업자 및 선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.
- ⑨ 낚시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 할 경우 낚시어선어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승객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.
- 가. 낚시승객은 낚시어선 운항에 있어 낚시어선어업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.
- 나. 낚시승객은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서 낚시도중 기상악화 시 낚시어선어업자가 안전대피를 위하여 승선토록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(수질오염방지)

낚시어선어업자 및 이용승객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낚시어선의 선내에 쓰레기 종량제에 사용하는 봉투를 비치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.
- ③ 항구 또는 포구에 입항한 후 출입항 신고기관에 입항신고 시 수거된 쓰레기 봉투를 소지하여야 한다.
- ④ 과다한 밑밥(일명"떡밥")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- ⑤납으로 만든 밭돌을 바다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산자원의 보호)

- ① 낚시어선어업자는 이용승객으로 하여금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 의한 포획금지체장 이하인 수산동식물을 포획해서는 아니 되며, 만약 포획될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어촌계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.

4. 신 ● 구 조문 대조표

제2조(안전운항 의무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어선업법」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승객의 안전은 물론 어장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낚시어선어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

혀 행

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안전운항 의무)

- ①(현행과 같음)
- ②(현행과 같음)
- ③(현행과 같음)
- (4)(현행과 같음)
- ⑤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여야한다
- ⑥ 낚시어선어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증과 승객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,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⑦ 낚시어선어업자는 무인도, 갯바위, 간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 시킨 경우 낚시승객과 상호 연락망을 유지하여 긴박한 상황 발생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태우고 입항하여야 한다.
- ⑧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.
- ⑨ 낚시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 할 경우 낚시어 선어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승객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.
- **가.** 낚시승객은 낚시어선 운항에 있어 낚시어선업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.
- 나. 낚시승객은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서 낚시도중 기상악화 시 낚시어선어업자가 안전대피를 위하여 승선토록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- **다.**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안 된다.